

순천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3. 25.

개정 2019. 9. 30.

개정 2020. 11.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사운영의 효율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부·학과·전공 통·폐합,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조에 따른 학부·학과·전공(이하“학과”로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구조 개편”이란 학과 통폐합, 학생정원 조정, 전임교원 소속 변경을 말한다.
2. “학과 통폐합”이란 이 대학교 학칙 제7조(학부·학과)제1항 <별표1>의 단과대학에 두는 학부·학과 및 전공의 통합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학생정원”이란 이 대학교 학칙 제10조(학생정원) 제1항 <별표2>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말한다.
4. “학생정원 조정”이란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
5. “전임교원 소속 변경”이란 학사구조 개편 등에 따라 당해 소속교원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기초보호학문”은 기초·보호학문진흥위원회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정의된 학문을 말한다.

제2장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이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구조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수회에서 추천한 5인을 임명직으로 하여 총 17인 이내로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학과의 교육과정 유사정도
4. 그밖에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정원조정

제7조(조정시기) 학생정원 조정은 매년 10월에 확정하되, 대학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감축 인원 산출 등) 학과의 학생정원감축대상 인원은 정보공시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다음 각 호의 값을 합한 수로 한다.

1. 최근 3년간 재학생 미충원 수의 최소값을 수업연한으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 절사한 값
2. 최근 3년간 신입생 미충원 수 최소값

(예시)

가. 최근 3년간 재학생 미충원수의 최소값을 수업연한으로 나눈값(소수점 이하 절사)

모집단위	모집단위별 재학생 미충원 수				최근 3년간 재학생 미충원 수의 최소값을 수업연한으로 나눈값 (b=a/4*) *수업연한	학생정원 감축 대상 인원 수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최소값 (a)		
**학과	17	22	27	17	4.25	4

나. 최근 3년간 신입생 미충원수 최소값

모집단위	모집단위별 신입생 미충원 수				학생정원 감축 대상 인원 수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최소값	
**학과	3	5	0	0	0

다. **학과의 정원감축대상 인원(가 + 나) = 4명

제9조(학생정원감축의 유예 등) ①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신설학과와 통합학과는 편제가 완성되는 해부터 산출가능한 지표를 적용하여 제8조의 학생정원감축대상인원을 산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생정원감축 유예는 모집단위별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학과는 원칙적으로 학생정원을 20명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④ 이 규정에 따라 학생정원이 감축된 학과는 향후 2년간 학생정원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조정정원의 활용) ① 학생정원 조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또는 대학 정책에 따라 학과신설과 기존학과증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적용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원감축되었던 학과 중에 최근 1년간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100% 이상을 충족하는 학과의 증원
 2.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이 최근 3년 연속 100% 이상을 충족하는 학과의 증원(단, 제1호 해당 학과 제외)
-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인원의 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범대학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생정원 조정은 사범대학 내에서 적용한다
1. 증원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 중 최근 5년간 감축 인원수가 많은 순, 학생정원이 적은 순, 당해연도 재학생충원율이 높은 순으로 적용. 이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과 중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평균값이 큰 순. 순위가 같을 경우 학생정원이 적은 순
 2. 증원방법: 잔여 조정 인원을 전부 배정시까지 증원 순위에 따라 1명씩 배정하는 것을 반복한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최근 5년간 감축 인원수를 초과하여 증원 할 수 없다.

제4장 학과 통폐합, 전임교원 소속 변경

제11조(학과 통폐합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학과 통폐합 대상으로 한다.

1. 학생정원 조정 결과가 15명 미만인 학과
2. 교육과정의 유사율이 현저히 높은 학과

②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학과는 학생정원에서 정원감축대상인원을 뺀 값이 3년 연속으로 15명 미만이 될 경우 학과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제12조(학과 통폐합 예외) 정부 정책 및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학과는 학과 통폐합에서 예외로 한다.

제13조(학과 통폐합 방법) 학과 통폐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학과의 자율적인 통폐합
2. 위원회 제안에 의한 통폐합

제14조(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전임교원 소속 변경) ① 학사구조 개편 대상 학과의 전임교원에게는 신분과 소속변경을 보장한다.

②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의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변경 소속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구조 개편 대상 학과 전임교원이 희망하는 학과. 단, 이 경우 희망학과 전임교원의 50% 이상 찬성필요
2. 신규 개설 학과, 교양교육원, 산학협력단 등

③ 소속변경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변경된 소속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학생정원조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 9. 30.> (순천대학교 학과진단에 관한 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호, 제10조 제3호와 같은 호 단서의 “학과평가”를 “학과진단”으로 개정한다.
- ③ (경과조치) (생략)

부 칙<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감축의 유예에 대한 적용례) ① 기존 학부에서 전공트랙제로 전환하여 제9조제2항에 의해 학생정원감축의 유예를 받은 학과가 단일학과로 통합하더라도, 제9조제2항에 의한 정원감축유예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학과 신설 또는 통합으로 학생정원감축을 유예받은 학과가 다른 형태로 학사구조 개편한 뒤 다시 기존 유예받은 학과로 개편하는 경우 정원감축 유예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1학년도에 개편된 학과부터 적용한다.